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12/10 통권 175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5)
 - 경영판단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 법령 위반 사례
-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간이영수증이 적법증빙으로 인정됨
-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 국세청이 앞장 선다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
-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무 있음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외부감사인 선임계약핵심 요약>

개념, 구분	구체적 내용, 기준, 방법, 주의점
외부감사대상 (피감회사)	㉗ 상장회사, 당년도나 다음연도 상장예정회사 ㉘ 대법인(직전년 자산총액 500억 이상이나, 매출액 500억원 이상) ㉙ 주식회사(전년 말 ① 자산 120억, ② 부채총액 70억 이상, ③ 매출액 100억 이상, ④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 해당) ㉚ 유한회사(① 자산 120억, ② 부채총액 70억 이상, ③ 매출액 100억 이상, ④ 종업원 100명 이상, ⑤ 출자사원 50명 이상 중 3가지 이상 해당할 것)
선임계약기간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 사업연도 개시일 전(12월 31일)까지 선임함 • 상장·비상장 일반기업 - 결산기말후 45일까지 계약선임 2주일내 신고 (12월 말 법인이면 2월 14일까지 계약, 2월 28일 계약보고) • 초도감사대상 - 결산일 후 4월말 계약, 5월 14일까지 계약보고
감사계약기간	• 일반회사 : 매1년 단위 계약(기존 연장계약이나 매년 다른 곳 가능) • 상장사, 대형사, 금융회사 - 연속 3년 단위 감사계약해야 함
감사인 적격 (감사법인)	• 일반회사 : 회계법인이나 개인감사반(소속 회계사 3인 이상) • 금융회사, 대형 비상장사 : 회계법인만 가능(감사반은 제외) • 주권상장회사 : 상장감사인 등록 회계법인만 가능(약 40개)
감사인 선정권	• 비상장 일반회사 : 내부감사(감사 없으면 회사가 선정)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 • 상장사, 대형사, 금융회사 :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받아 감사가 선정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57호 / 주간 50호

2025. 12. 10.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외부감사인 선임계약 핵심요약	표지
CEO의 경영산책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4)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이 배제되는 경우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 고민할까?)	- 국적상실로 인한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문의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차량으로 승용차 구매 후, 포괄양도양수 및 판매 - 기부금 관련문의 - 변제기간이 종료 된 회생채권 미회수분 대손처리는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간이영수증이 적법증빙으로 인정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 관련 제도 수정 - 개인연금 세제혜택 현황	8 9
직장인 Survival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부가-828, 2025.04.2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교세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450, 2025.06.25)	11 12
세정 뉴스와 해설	내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무 있음	11
세무정보	-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 국세청이 앞장선다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	14 31 33 36
회계정보	-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3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5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5)

- 경영판단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 법령 위반 사례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법원은 경영판단 위반 여부를 정할 때 먼저 위법성과 이해상충 존재를 살피고, 그 다음 절차의 적정성, 선의·목적, 내용의 합리성, 통상의 이사 기준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 경영판단 위반 여부 결정시 법원이 우선 고려하는 요소

- 1) 위법·이해상충 선제 점검 : 법령 위반이 있으면 경영판단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위반으로 보게 된다. 지배주주 관여, 특수관계자 거래 등 이해상충이 있으면 독립적 절차가 없을 때 엄격 심사로 전환된다.
- 2) 절차의 적정성: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정보 수집·조사·검토를 거쳤는지, 외부자문·대안 비교, 리스크 평가, 회의기록 등 절차적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본다.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으면 결과와 무관하게 원칙 적용이 약화되거나 배제된다.
- 3) 선의와 목적: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했는지, 신의성실에 따른 판단인지, 사익추구 정황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해상충 정황은 선의 추정을 흔들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유발한다.
- 4) 내용의 합리성: 당시 가용정보 기준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통상의 이사라면 선택 가능한 범위의 결정인지 평가한다. 경제적 낭비에 가까운 불공정 조건이나 가치 괴리가 크면 위반 판단 가능성이 높아진다.
- 5) 통상의 이사 기준: 동일 상황에서 통상의 합리적 이사라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가 마지막 점검선으로 활용된다.

법원은 “위법·이해상충 배제 → 절차 적정성 → 선의·목적 → 내용 합리성 → 통상의 이사 기준”의 흐름으로 경영판단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법령 위반 사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임무해태가 되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는 회계·공시 위반, 금융·보험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이다.

- 회계기준·허위공시 위반 : 기업회계기준에 반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 또는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 항변이 배척된다(예 : 고탐 사건 등). 분식결산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조사 조치를 하지 않고 승인 공시를 방치한 경우에도 임무해태로 책임을 진다.
- 금융·보험 규제 위반: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융규제 위반이 인정되면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예: 고려생명 사건).
- 공정거래법 위반 : 지배기업이 자회사 등에 특정 주식 매입을 지시하여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경영판단이 배제된다.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감시의무 위반 :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이사의 면책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허위공시 자체는 위법으로서 경영판단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일반 법리 확인 판결 : 상법 제399조의 ‘법령 위반’에는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감독규정 등 법규명령도 포함되며, 이 경우 원칙적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판결은 개별 사안별로 위법성 존재 시 경영판단 요건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회계·공시, 금융·보험, 공정거래, 자본시장 규제 등 ‘명시적 위법이 확인된 영역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며, 위법이 소명되면 법원은 곧바로 임무해태·손해배상책임 판단으로 넘어간다.

국적상실로 인한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문의

Q 퇴직한 직원 중 최근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인해 지난 재직기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이 환급되었습니다.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과 그에 대한 환급금 이자가 회사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 (회사 납입분 및 환급금 이자)를 회사의 기타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회사가 부담한 연금 및 환급금이자 입금된 경우 기타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차량으로 승용차 구매 후, 포괄양도양수 및 판매

Q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량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받아, 차량운반구등록 및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던 차에

1. 포괄양수양도로 동일업종의 사업자에게 양도 시, 차량운반구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넘길 수 있는지, 차량도 함께 넘겨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제외가 가능하다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 포괄양수양도 혹은 폐업으로 이후, 개인이 승요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사업용차량으로 사용했던(감가상각비) 승용차를 법인(중고차매매상 등)에게 판매 시, 개인에게 판매할 때와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혹은 다른 기타 내용)

A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포괄양수도로 인정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은 제외하여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해당 승용차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업무용 승용차라면 포함시켜야 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 폐업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매각시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른 차별점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해당 중고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기부금 관련문의

- Q** 본원에서 현물(환자 및 직원용 마스크)을 대량 기부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본원은 학교법인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교육/연구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환자지원 을 위한 기부일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1. 기부금 처리 가능 여부(법정 or 지정)
 2.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 시 기부채납원 상 가액은 거래명세서 등의 가액으로 처리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 A** 현물을 기부금으로 받은 경우 기부금처리가 가능하며, 시설비나 연구비 목적의 기부금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현물의 경우 기부자가 구입한 시가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변제기간이 종료 된 회생채권 미회수분 대손처리는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 Q**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서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된 건 해당 귀속년도에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걸로 하는데, 인가결정 이후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 미변제 되는건 귀속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대손처리는 신고사항인지 결산사항인지 애매하네요.
- 법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회수불능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처럼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변제계획이 있었는데 변제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 A** 귀사의 의견처럼 법원에 회생계획인가를 폐지하고 아예 면책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회수노력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도 회수가 안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후 일반 채권처럼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간이영수증이 적법증빙으로 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별다른 고민 없이 지출처리를 했던 소액의 거래들에 대해서도 지출증빙 입수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액거래들 중 주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이나 통행카드충전비용의 증빙수취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료도로 통행료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다

법인의 대부분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기에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통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출장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카드를 충전하거나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애매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행요금(통행카드충전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닌 일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에 대해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행료에 대해서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만 잘 챙겨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지도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사용료 또는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세 없고,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데,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통행료를 지급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하는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 과세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용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이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비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이 때 도로 및 관련 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으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별도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서면3팀-1553, 2005.09.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1350, 2003.0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억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 관련 제도 수정

구분	정부안	수정안
적용세율	• 3억원 초과구간 35%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 초과구간 30%
시행시기	• '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 '26.1.1 이후 지급한 배당분
적용대상 전제요건	•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노력형법인 적용요건	• 직전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화

고배당 펀드 분리과세 주요 내용

펀드 투자자산 요건	• 자산의 60% 이상을 고배당기업에 투자
고배당기업 요건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
투자 혜택	• 펀드 배당에 14~35% 분리과세 적용



개인연금 세제혜택 현황

구분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액 600만원에 대해 13.2-16.5% 세액공제 - 운용수익 과세이연 - 연금수령시 저율과세(3.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액 900만원에 대해 13.2-16.5% 세액공제(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 운용수익 과세이연 - 연금수령시 저율과세(3.3-5.5%)
투자한도	연간 1800만원	연간 1800만원



기존 아파트 전세 주고 다른 아파트 샀다가 양도세 폭탄 사례

양도차익 8억원(5억원 매수해 13억원 매도) 보유·거주 기간 11년

	규제 전	규제 후
전세 깬 집 처분	언제든 가능	세입자 나갈 때까지 불가능
양도세 비과세	양도가 12억원까지 적용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없음
과세 대상	980만원	7억9750만원
적용 세율	6%	62%
예상 양도세(지방세 포함)	65만원	5억436만원

※ 규제 후 세율 62%는 공제 혜택이 사라져 세율이 42%(5억~10억원 구간)로 오르고 다주택 중과세율 20%포인트가 더해진 결과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

1. 하루의 시작은 '계획 10분'으로

아침의 10분은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한눈에 정리하고 중요도와 긴급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보세요.

계획이 명확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일정을 '단위 업무'로 쪼개기

"보고서 작성하기"처럼 막연한 목표는 일정 관리의 적입니다.

큰 업무를 '자료 수집 → 초안 작성 → 검토'처럼 구체적인 실행 단위로 쪼개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3. 시간대별로 업무 성격 구분하기

집중력이 높은 오전에는 분석, 기획 등 사고가 필요한 업무를 배치하고,

오후에는 회의, 피드백, 정리 업무처럼 비교적 루틴한 일을 배치하면 하루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일정은 꼭 채우지 말고 '여백'을 남기기

효율적인 일정은 '빡빡한 일정표'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회의나 요청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하루 일정의 20% 정도는 유연하게 남겨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이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업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조정이 쉬워집니다.

5. 하루의 마무리는 '리뷰 5분'으로

퇴근 전 5분, 오늘의 일정을 되돌아보며 완료된 일과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을 구분해 두세요.

이 작은 루틴이 다음 날의 계획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주고, 업무에 대한 통제감도 높여줍니다.

일정 관리의 핵심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도 흐름과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분명히 더 단단하게 쌓여 있을 것입니다.

최신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무 있음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사전법규국조-451, 2025.06.18

질 의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한·미 양국의 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의 판정
- 국내 5년 이상 거주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회 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住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부가-828, 2025.04.21

질 의

- **운동센터 **점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으로 대가를 지급받음

질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

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450, 2025.06.25

■ 질 의

- '05.03월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25.03월 본인명의 A주택* 지분(50%)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
 - * A주택이 소득령 154①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전제

질의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재산-423, 2025.06.25

■ 질 의

- (쟁점1)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내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법인세 세율이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전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35→25% 합의... 내년부터 시행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앞서 공개된 정부안 35%보다 10%p 낮춘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소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이하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시에는 30%가 적용되지만, 전체의 0.001%인 100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인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세는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200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합산 과세한다.

한편, 정부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25%)과 교육세율 0.5%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1%)은 추후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관보 게재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는 4일 공식 게재는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중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리농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2025. 1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11.3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 정부가 `25.9.3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❶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 3개월 유예

* (정부안) `26.7.1. 시행 → (수정안) `26.10.1. 시행

❷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현행 유지

부가가치세법

❶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3→4%)

❷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개별소비세법

❶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과 동일)부터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❶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 관련 제도 수정*

구분	정부안	수정안
적용세율	• 3억원 초과구간 35%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구간 30%
시행시기	• '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 '26.1.1. 이후 지급한 배당분
적용대상 전제요건	•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노력형법인 적용요건	•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❷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 * (정부안)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수정안)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❸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❹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❺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 * 내국법인이 중소·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10% 세액공제

❻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 (정부안) '28.12.31. → (수정안) '26.12.31.

❸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 (정부안) '28.12.31. → (수정안) '26.12.31.

❹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 (정부안) '28.12.31. → (수정안) '26.12.31.

❺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1년 연장*



* (정부안) '28.12.31. → (수정안) '26.12.31.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2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현행) '25.12.31.까지 취득 → (개정) '26.12.31.까지 취득

13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 (현행) 3년 100% + 2년 50% 감면 → (개정) 3년 100% + 2년 50% + 5년 30% 감면

14 연구개발 우수인력 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 (현행)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우수인력 2,000만원)

15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6.12.31. → (개정) '28.12.31.

16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및 조세감면제도 유지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

* 조세감면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세수감면 보완 대책 등 포함

17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 '26.4.1.~'28.12.31. 기간동안 일정 출고량 한도 내에서 세율 30% 경감

18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곤란 소액체납액(5천만원 이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관세법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28.12.31.) 및 감면을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 감면율: (현행) '25년 100%, '26년 80%, '27년 60%, '28년 40%, '29년 20%, '30년 종료
(개정) '25~'28년 100%, '29년 종료

- ②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 ③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 관세 면제 신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 ④ 관세청의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승객예약자료, 위치정보 등)에 마약류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되도록 일괄 정비
- ⑤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가능 사유 구체화
* (정부안)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수정안)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마약류 외 원료물질·임시마약류 휴대·은닉 의심자도 검색 가능 대상에 포함

농어촌특별세법

- 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

참 고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국세징수법

①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 1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②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③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④ ①-③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②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 변경(국징법 § 10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의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 (시행시기) '26.7.1. 이후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3개월 유예 ○ '26.7.1. → '26.10.1. 이후 시행

< 수정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집행 준비기간 확보

③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 철회(국징법 § 11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면제 사유 ○ 심판청구 등이 계속중인 경우 ○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현행 제도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 법원은 30일 이내 감치 명령 * 3회 이상 & 1년 경과 & 2억원 이상 </div>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부가가치세법

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대상) ①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②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상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top: 10px;"> ○ (좌 동) </div> ○ (세율) 3 → 4%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②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부가법 §7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등 의무 및 이에 따른 과태료 <input type="checkbox"/> (목적) 납세보전 또는 조사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납세의무자 <input type="checkbox"/> (의무) 장부·서류 등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2천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의무) 장부·서류 등(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좌 동)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①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②)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연초의 잎 → 연초 및 니코틴) <input type="checkbox"/>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①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 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p> <p>○ (공제대상 및 공제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p>○ (적용기한) '28.12.31.</p>	<p><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10% (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 5%</p> <p>○ (좌 동)</p>

< 수정이유 > 수출기업 상생협력 지원
 < 시행시기 >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조특법 § 12의2③)

정 부 안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p> <p>○ (대상)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p> <p>○ (감면율) 3년 100% + 2년 50%</p> <p>○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p> <p>○ (적용기한) '28.12.31.</p>	<p><input type="checkbox"/> 감면 확대</p> <p>○ (좌 동)</p> <p>○ (좌 동)</p> <p>○ (감면한도 확대)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우수인력 2,000만원)</p> <p>○ (좌 동)</p>

- < 수정이유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범위 확대(조특법 § 71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input type="checkbox"/>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단,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분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추가 -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 개정이유 > 지방균형발전 지원 및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 시행시기 > '25.11.28.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 85의6②)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3년 100% + 2년 50%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1억원 + 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8.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5년 30%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 수정이유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시행시기 > '26.1.1.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등
(조특법 § 88의5·§ 89의3, 조특령 § 82의5·§ 83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저울분리과세 일부 도입 ○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울 분리과세 ①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input type="checkbox"/> 저울분리과세 전환 대상 축소 ○ (좌 동) ①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가입일	'28.12.31.	'29.1.1. ~	'30.1.1.	가입일	'28.12.31.	'29.1.1. ~	'30.1.1.
출자일	까지	'29.12.31.	부터	출자일	까지	'29.12.3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9%	감면 내용	비과세	5%	9%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②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어·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②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어·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가입일	'25.12.31.	'26.1.1. ~	'27.1.1.	가입일	'25.12.31.	'26.1.1. ~	'27.1.1.
출자일	까지	'26.12.31.	부터	출자일	까지	'26.12.3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9%	감면 내용	비과세	5%	9%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적용시기 > '26.1.1. 이후 가입·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⑥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조특법 § 91의22)

현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 ○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미추징 사유) ▪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추가 ○ (좌 동)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도해지 시

< 개정이유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보호

7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5)

현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input type="checkbox"/>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등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납입한도) 연 600만원 <input type="checkbox"/> (의무가입기간) 3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 > 청년 자산형성 지원

8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8의9)

현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input type="checkbox"/>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비수도권 소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가액 기준*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24.1.10. ~ '25.12.31. 중 취득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left: 20px;">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 '25.12.31. → '26.12.31.

< 개정이유 > 지방균형발전 지원 및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9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5)

현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input type="checkbox"/>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결과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 금액이 일정 금액(시행령에서 규정*) 미만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총수입금액 기준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재판 진행 사실이 없을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종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청 기간) 2026. 1. 1. ~ 2028. 12. 31. ○ (결정)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통지 ○ (취소)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납부의무 소멸 취소
--	---

< 개정이유 >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 시행시기 > '26.1.1. 이후 시행

10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 인하 등(조특법 § 104의2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대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제요건)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이상 증가 				<input type="checkbox"/> 대상요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input type="checkbox"/> 적용세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과세 표준</td> <td style="width: 15%;">2천만원 이하</td> <td style="width: 15%;">2천만원 ~ 3억원</td> <td style="width: 15%;">3억원 초과</td> </tr> <tr> <td>적용세율</td> <td>14%</td> <td>20%</td> <td>35%</td> </tr> </table>				과세 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억원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input type="checkbox"/> 적용세율 인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과세 표준</td> <td style="width: 15%;">2천만원 이하</td> <td style="width: 15%;">2천만원 ~ 3억원</td> <td style="width: 15%;">3억원~ 50억원</td> <td style="width: 15%;">50억원 초과</td> </tr> <tr> <td>적용세율</td> <td>14%</td> <td>20%</td> <td>25%</td> <td>30%</td> </tr> </table>					과세 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억원	3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25%	30%
과세 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억원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과세 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억원	3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2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6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배당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 적용시기 >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11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 104의3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input type="checkbox"/> (대상) 한국산업은행 <input type="checkbox"/> (내용)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8.12.31.

- < 개정이유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 적용시기 >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106· § 111)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8.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26.12.31.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3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 106)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8.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10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28.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11의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리터당 56원 감면 ○ (적용기한) '28.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6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조특법 § 11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 (대상) ①~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류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류 ①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주세법 별표 제4호 라목·마목) ② 알코올 도수분 일정 도수 이하 ③ '28.12.31까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 (감면) 주세율 30% 경감(일정 출고량 한도) ※ 적용대상 주류의 구체적 범위, 출고량 한도, 알코올 도수 요건은 시행령 규정

- < 개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 시행시기 > '26.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21의33①)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5년 100% + 2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적용기한) '26.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12.31.

- < 개정이유 > 지역균형발전 지원

18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조특법 § 14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세감면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 (작성대상 조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몰기한 도래 ② 시행 후 2년 미도과 ③ 기존 조세특례 범위 확대 ○ (작성내용)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등 ○ (제출기한) 매년 4월 30일 <추 가> 	<input type="checkbox"/>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 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 < 개정이유 > 조세특례 사후관리 내실화
- < 적용시기 >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조특법 § 142의3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 (작성자) 기획재정부장관* * 1.2일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련 자료 제출 의무 ○ (작성내용) 직전연도 조세지출 실적 분석 * 구체적인 작성방법·제출시기 등은 대통령령 위임

< 개정이유 > 조세지출 관리 내실화
 < 적용시기 >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시행

관세법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을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관세법 § 89⑥ 1호)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대기업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물품 수입 시 감면율	<input type="checkbox"/> 100%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을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수입 기간</td> <td>'25.1.1. ~12.31.</td> <td>'26.1.1. ~12.31.</td> <td>'27.1.1. ~12.31.</td> <td>'28.1.1. ~12.31.</td> <td>'29.1.1. ~12.31.</td> </tr> <tr> <td>감면율 (%)</td> <td>100</td> <td>80</td> <td>60</td> <td>40</td> <td>20</td> </tr> </table>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감면율 (%)	100	80	60	40	2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수입 기간</td> <td>'25.1.1. ~12.31.</td> <td>'26.1.1. ~12.31.</td> <td>'27.1.1. ~12.31.</td> <td>'28.1.1. ~12.31.</td> <td>'29.1.1. ~</td> </tr> <tr> <td>감면율 (%)</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0</td> </tr> </table>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	감면율 (%)	100	100	100	100	0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감면율 (%)	100	80	60	40	20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																				
감면율 (%)	100	100	100	100	0																				

< 개정이유 > 항공산업 경쟁력 지원

2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관세법 § 91, 조특법 § 106①10호)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용품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특수 용도 물품, 재활병원사용 장애	<input type="checkbox"/>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 추가 ○ (좌 등)

인 재활용 의료용구 등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	---

- < 개정이유 > 희귀난치성질환자 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6.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한 핵심광물 관세 면제(관세법 §9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정물품의 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 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한 핵심광물*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 < 개정이유 >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시행시기 > '26.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규정 일괄 정비(관세법 §137의2, §264의11, §26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검사를 위한 승객예약자료,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우편물 등, 밀반입된 마약류 위치정보 	<input type="checkbox"/>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 마약류등*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 < 개정이유 > 마약류 단속 강화
< 시행시기 > '26.1.1. 이후 요청·요구·수집하는 분부터 적용

⑤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가능 사유 구체화(관세법 §26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마약류·유해물품 등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무기류 등의 휴대·은닉이 	<input type="checkbox"/> 신체 검색 사유 구체화 및 마약류 원료물질·임시마약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 마약류등*

의심되는 경우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의심되는 경우 →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	---

< 수정이유 > 마약류 단속 강화

농어촌특별세법

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농특세법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비과세종합저축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 (좌 동) </div> ○ 청년미래적금

< 개정이유 > 청년 자산형성 지원

②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규정 신설(농특세법 §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납부유예 규정 신설 ○ 본세를 납부유예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

< 개정이유 > 조문 명확화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2025. 11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25.7.31.)」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6.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2.1.-12.1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6.1.1.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 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증권거래세 세율 ○ 기본세율: 0.35% ○ 탄력세율 ① (코스피) 0%(농특세 0.15%) ② (코스닥·K-OTC) 0.15%(농특세 없음) ③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율 조정 ○ (좌 동) ○ 탄력세율 ① 0.05%(농특세 0.15%) ② 0.20%(농특세 없음) ③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 26의3)

현 행	개 정 안
<p>□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 설> <p>-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p>	<p>□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 ② 비상장법인 주주(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 국세청이 앞장선다

- 국세청, 2025. 11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월 28일(금)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회장 제임스 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8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국상공회의소
 -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90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국내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 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25.12.1부터 시행).
 - 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

-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 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 → 생산 → 매출증대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안 /

개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투자기업 ¹⁾ 」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요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²⁾) 또는 20%(중견기업 ²⁾) 이상 투자금액 ³⁾ 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
방법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 확인 후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중견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② 외국계기업·외국인의 세무신고 편의 증진 및 이중과세 부담 완화

-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안내 등 13개 항목 제공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영어로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안내»,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등 책자 발간
- 또한,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rrangement, APA)’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26.6월 최초신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쌍방 APA 처리건수(평균 처리기간) : ’19년, 40건(35개월) → ’23년, 85건(27개월)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28일 (금)	12월 1일 (월)	12월 2일 (화)	12월 3일 (수)	12월 4일 (목)
미 달 러 (USD)	1464.80	1465.90	1469.10	1469.60	1468.70
일 본 엔 (JPY)	937.29	939.47	945.15	942.96	946.33
영 국 파 운 드 (GBP)	1939.32	1941.00	1940.90	1942.08	1960.79
캐 나 다 달 러 (CAD)	1044.31	1049.24	1049.58	1051.82	1052.79
홍 콩 달 러 (HKD)	188.31	188.29	188.63	188.80	188.69
위 안 화 (CNH)	207.05	207.13	207.83	207.60	207.98
유 로 화 (EUR)	1699.17	1701.18	1705.55	1708.56	1713.97
호 주 달 러 (AUD)	957.39	960.31	961.23	965.16	969.34
싱 가 폴 달 러 (SGD)	1129.55	1131.23	1133.87	1133.60	1135.2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54.50	354.72	355.63	355.62	356.22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

- 국세청, 2025. 11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 *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함)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
 -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25.10.22.)하였습니다.

-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환급대상은 ’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5. 11

◆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구 분	선임기한 ^{주1)}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 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권자
① 주권상장회사	D + 45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3개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주2)}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주3)})
②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③ 기타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주2)} 감사 ^{주2), 주4)}
④ 유한회사	D + 45일			

주1)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주2)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

주3)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주4)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회사 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고

1. 외부감사제도 개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외부감사대상 판단 기준>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일정규모 이상	2가지 이상 해당	3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①~④ 좌동 ⑤ 인원수 5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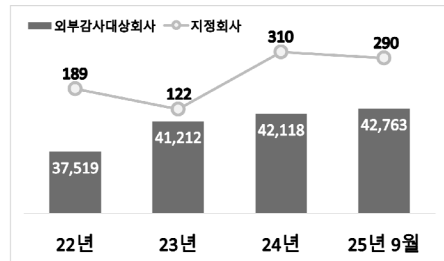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
-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발생
 - ➔ 이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감사인 선임관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현황>

(단위: 사)

구 분	'22년	'23년	'24년	'25.9월
외부감사 대상회사	37,519	41,212	42,118	42,763
지정회사 수 (선임기한·절차위반)	189	122	310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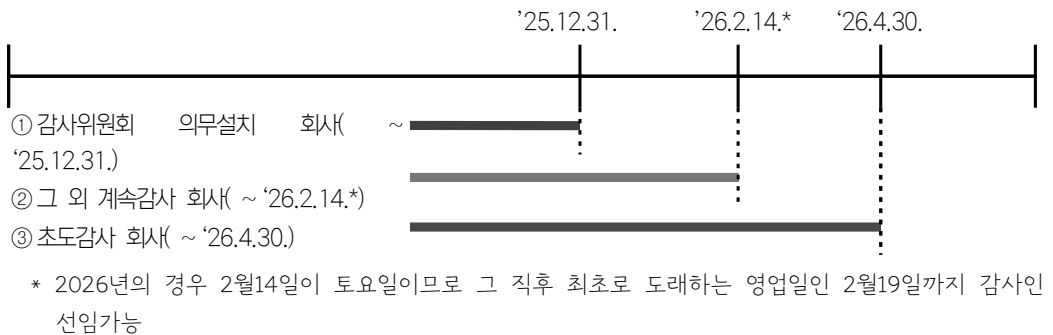
II. 감사인 선임제도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①선임기한, ②선임대상 사업연도, ③감사인 자격요건, ④선정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선임기한

-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함
 - * ①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예시> 12월 결산 회사의 2026년 감사인 선임기한



감사인 선임기한 위반 예시

- A사(12월 결산)는 '24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550억원으로 '25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5.4.30. '가'회계법인과 초도 감사계약을 체결
 - '26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직전사업연도와 유사한 시점인 '26.4.30. 감사계약을 체결
 - ➔ '26사업연도에는 계속감사 회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6.2.14.*)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동 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감사인 선임가능



② 선임대상 사업연도

-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대상 사업연도 위반 예시

- B사는 '24년대형비상장회사 → '25년기타비상장사 → '26년대형비상장회사로 회사 유형이 변경되었으며, '24년에 '나'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24~'26)을 체결하고 '나'회계법인을 '26사업연도까지 감사인으로 유지
 - ➔ 다시 대형비상장회사가 된 '26사업연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재선정하고, 3년('26~'28) 감사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①감선위 개최없이 ② 기존 계약만('26) 유지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③ 감사인 자격요건

-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39개)에 한하여 감사인 선임이 가능함
 -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회사

감사인 자격요건 위반 예시

- C사는 상장을 위해 '25사업연도 지정감사를 받았으나, '26사업연도에는 상장 가능성이 낮아 미등록인 '다'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
 - 예상과 달리 '26사업연도 중순 상장이 되었지만, 기존 감사계약을 체결한 미등록 '다'회계법인과 '26사업연도 감사를 진행
 - ➔ 상장 후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미등록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유지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④ 감사인 선정권자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함
 - *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포함
 -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
 -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

감사인 선정권자 위반 예시

- D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24년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동사의 감사는 '25사업연도 감사인으로 '라'회계법인을 선정
 - 합병으로 '25년말 자산총액이 5,100억원이 되어 '26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회사가 되었으나, '25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26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정
 -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선위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26사업연도에 ①감선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②1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5)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 감선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법령상 자격(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을 갖춘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
-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회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감선위 위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의 전원 출석으로 감선위(약식 감선위) 개최 및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가능
 -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기관투자자 임직원 중 1인

〈참고〉 약식 감선위에서 외부전문가의 역할

- 외부전문가는 약식 감선위 위원이 아닌 위원장으로만 참여 가능
- 정식 감선위와 달리 외부전문가가 주주·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기관투자자 임직원을 대신하여 약식 감선위 위원으로 참여 불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위반 예시

① 위원자격 및 위원 수

- E사는 '26 ~ '28 사업연도에 대해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신규 감사가 선정한 '마'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감선위 구성 시 신규 감사,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주주 등 5명으로 감선위 위원을 구성
 - ➔ 감선위를 5명으로 구성할 경우 감선위 위원으로 사외이사를 1명만 포함해야 하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 F사는 '26 ~ '28 사업연도에 대해 사내이사 및 회계팀장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감선위를 구성하여 '바'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
 - ➔ 사내이사(상법상 비상무이사 포함) 및 직원은 감선위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② 부적격 위원장 임명

- G사는 '26 ~ '28 사업연도에 대해 내부감사를 감선위 위원장으로 하여 감선위를 구성하고 '사' 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
 - ➔ 회사의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선위 위원장이 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③ 약식 감선위 운영방법 위반

- H사는 '26 ~ '28 사업연도에 대해 약식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아'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 약식 감선위에 참석
 - ➔ 외부 전문가는 약식 감선위 위원장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주주·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기관투자자의 임직원을 대신하여 약식 감선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⑥ 감사인 선임보고

-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하여야 함
 - *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고의무 없음

감사인 선임보고 위반 예시

- 대형비상장회사인 사의 감사는 '자'회계법인과 체결한 3년 감사계약('23~'25)이 만료됨에 따라, 감선위 승인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회계법인을 '26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정
 - '26.2.10. '자' 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와 감사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
 - ➔ 감사인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함에도,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 외부감사법 위반

Ⅲ.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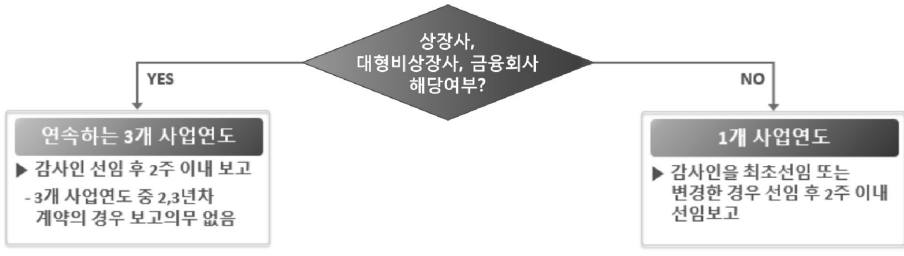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26년 1월 예정)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 / 7763) 등을 통해 서도 적극 안내 예정

붙임1 **감사인 선임제도 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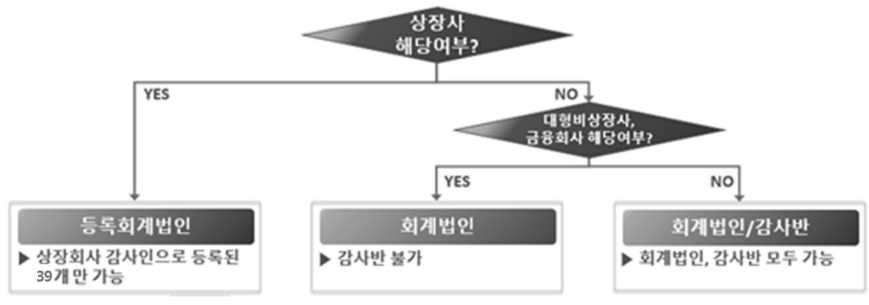
①
선임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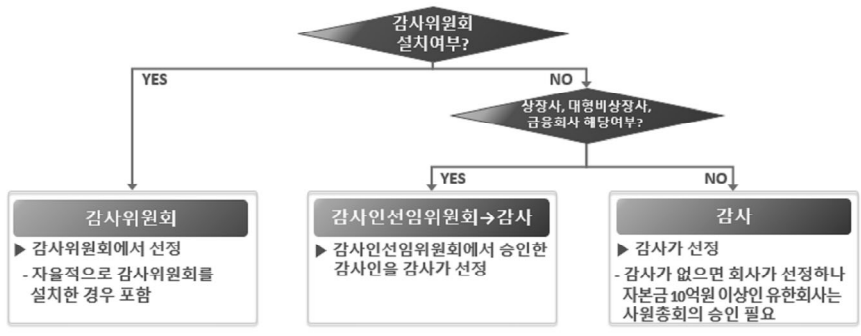
②
사업
연도



③
감사인
자격
요건



④
선정
권자





붙임 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1

주권상장회사*

-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코스닥시장 상장회사·코넥스시장 상장회사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5.12.31.) 감사인 선임
 - ※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39개)만 선임 가능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권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②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이상) 소속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③ 이외에 비상장주식회사: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5.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권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자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3

기타비상장주식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제외)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



-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 단,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6.4.30.까지 선임
- ※ 만약 자산 등 규모 축소로 외감대상에 포함될지 불분명한 회사는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결산이 종료된 후 제외신청 가능

- (선임대상 사업연도)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권자)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4

유한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
-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
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
능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6.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
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참고 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 (위원 수) 반드시 5인 또는 6인으로 구성(6인 초과 불가)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 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
직원 1명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 사외이사를 외부전문가로 충원하는 것은 불가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선위 전원 동의를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참고 2 선임보고 방법 안내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업무자료(회계)→외부감사인 선임→외부감사FAQ→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자료 게시를 참고
-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 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 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 *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수정 대상 서류의 접수번호 클릭→수정(재제출) 클릭→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 *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 기준으로 처리